

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11.22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중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[2004.3.11 법률 제7188호로 공포]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요구됨

2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 :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- 부산광역시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- 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
- 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 등

나.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 된다.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다.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
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라.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)

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.

3. 관련법령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부산광역시사하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, 총괄·조정, 안전관리의 협의·조정,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구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구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
3. 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
4.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
1.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구청장)
 2. 사하소방서장
 3. 사하경찰서장
 4. 6339부대 3대대장
 5. 서부교육청 교육장
 6. 각 국장 및 보건소장
 7.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·단체의 장
 8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- ③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
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
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
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
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
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
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
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
위원회를 둔다.

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한다.

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
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④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은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⑥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활용) 새로운 정책의 개발·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
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와 연구 등을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은 이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임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